

2025 고교야구 주말리그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리그는 2025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후반기)로 통칭하며, 각 권역별로 구분한다.

제2조 (목적) 본 리그는 야구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건전한 학교 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최) 본 리그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제4조 (주관) 본 리그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총괄 주관하나 각 권역별 리그는 경기가 개최되는 야구장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진행한다.

제5조 (리그구분) 본 리그는 개최 시기에 따라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며, 권역별 편성은 협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규정의 승인) 본 리그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2장 참가 자격

제1조 (팀 참가 자격) ① 본 리그 참가하는 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며, 2025년 정기등록 기간 동안 「경기인 등록규정」 제12조 2 [팀등록 승인]에 의거하여 대회 최소참가 인원인 18명 이상을 등록완료한 팀

2. 전년도 협회 주최 전 팀 참가 전국고교야구대회를 1회 이상 출전한 팀

② 창단팀(재창단팀 포함)은 창단 당해 연도 본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경기인 등록규정 제12조 2 [팀등록 승인]에 의거하여 창단 승인을 완료한 이후 협회 주최 전 팀 참가 전국고교야구대회를 1회 이상 출전해야만 다음 연도부터 본 리그 참가 자격을 얻는다.)

제2조 (선수 참가 자격) ① 본 리그에 참가하는 팀의 선수는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선수에 한한다.

② 경기인 등록규정 제18조 [활동 제한 및 예외]에 의거하여 대회 출전 제한을 받는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단, 대회 기간 중 대회 출전 제한이 해제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참가 신청 기간)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지정한 기간 중에 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및 협회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 제3장 팀(선수, 지도자 및 임원)의 참가 신청

제1조 (팀의 참가 신청 및 활동제한) ① 팀의 리그 참가 신청은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2025년 정

기등락을 필한 팀에 한하여 가능하며, 선수의 대회 출전제한은 「경기인 등록규정 제18조 [활동 제한 및 예외]」에 따른다.

② 리그 참가 팀은 선수 **18명 이상** 30명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리그 기간동안 등록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③ 리그 진행 중 참가신청서(팀 이적선수를 포함)는 시기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며 해당 주의 참가신청서 제출은 매주 목요일 15시까지 마감하여 반영하고 이후 제출된 건은 차주 리그 경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선수의 출전 제한 확인 및 조치) 협회가 사전에 각 시·도협회를 통해 발송한 대회 출전 제한 선수 명단에 대한 확인과 조치(미비서류 제출, 소명 등) 책임은 각 참가팀에 있으며, 협회 사무처 정상 업무일(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선수의 경기 출전 제한 또는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이적동의서 미제출 사유의 경우 경기 당일 배정 기록원의 확인으로 출전 가능 여부를 최종확인 받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3조 (지도자 및 임원의 리그 참가) ① 지도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자격은 「경기인 등록규정 제21·22조[등록자격, 지도자 등록 자격]」을 따른다.

②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관리담당자)의 리그 참가 신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감독 1명, 코치 4명, 선수관리담당자 1명으로 최대 6명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단, 참가신청한 지도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원(부장, 클럽인솔자)은 2팀 이상에 중복으로 참가신청 할 수 없다.

제4조 (리그 관련 증명서의 발급) 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도자, 선수의 리그 참가 기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터넷 발급으로 제공한다.

② 각 증명서 중 리그 참가와 관련한 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 경기실적증명서(선수) : 선수의 리그 참가 및 출전 경기의 각종 스탯 등(야수/투수)

2. 지도자 실적증명서 : 지도자의 지도팀의 상위(3위 이상) 입상 실적 등

3. 팀 실적 증명서 : 참가팀의 상위(3위 이상) 입상 실적으로 팀 공문을 통해 발급하며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도자 및 팀 실적 증명서의 발급 시기는 대회 종료 후이며, 개인 경기실적증명서(선수)의 발급 시기는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마지막 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이후로 한다.

■ 제4장 리그 방식 및 경기 일정

제1조 (리그 진행) ① 본 리그는 각 권역 간의 총 경기 수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권역에 편성된 팀의 지역에 따라 홈 어웨이 경기 수를 배분한다. 경기장은 해당 권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결정하며, 경기장 사정으로 인한 중립 경기장 또는 타 지역 경기장 사용은 시·도협회 간 합의하에 가능하다.

② 3월부터 7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우천, 기후, 경기장 사정, 감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일정은 본 리그 종료 후 재편성된다.

③ 권역 리그의 팀 편성, 경기 일정 및 장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④ 리그 경기 진행시 편성 권역의 시·도협회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기 일정 및 대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 게재된 내용을 최종으로 한다.

제2조 (리그 순위 결정)

각 권역의 리그 순위 결정의 우선 순위 기준은 아래 순서와 같다. 단, 추가 경기 편성의 경기성적은 리그 순위산정(승점 배점)에서 제외하며, 5개 팀 편성 권역의 경우 각 팀이 6경기를 완료한 시점까지의 경기성적으로 전·후반기 순위를 산정한다.

1. 리그 전체 경기의 승점 (승 2점, 패, 0점) [전·후반기 각 6경기]
2. 두 팀 이상이 리그 전체 경기에서 동일한 승점을 획득했을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해 아래의 기준을 각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 가. 승자승 규칙-해당 팀 간의 경기에서 승리
 - 단, “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나.”또는 “다.”항목을 적용한다.
 - 나. 승점이 동일한 팀들 간의 순위 결정은 아래 순에 따라 적용한다.
 - (1) 해당 팀 간의 경기에서 정규이닝(9회) 실점의 합산 (최소 실점)
 - (2) 해당 팀 간의 경기에서 정규이닝(9회) 득점의 합산 (최다 득점)
 - (3) 해당 팀 간의 경기에서 팀 타율
 - (4) (1)(2)(3)이 모두 동일할 경우 추첨 진행
 - 다. 팀 간 경기를 진행하지 않은 승점이 동일한 팀들 간 순위 결정은 아래 순에 따라 적용한다.
 - (1) 전체 리그 경기에서 정규이닝(9회) 실점의 합산 (팀 총 최소 실점)
 - (2) 전체 리그 경기에서 정규이닝(9회) 득점의 합산 (팀 총 최다 득점)
 - (3) 전체 리그 경기에서 팀 타율
 - (4) (1)(2)(3)이 모두 동일할 경우 추첨 진행

제3조 (리그 일정의 변경)

- ① 경기 날짜, 시간, 장소, 대진 등 경기 일정 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있다.
- ② 대진 추첨 이후 참가 팀의 사유로 인하여 리그 경기 일정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합당한 사유와 일정 변경되는 팀(상대팀+일정 변경팀)에 대한 변경동의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시·도협회를 통해 협회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리그가 시작된 이후 참가 팀의 일정 변경 요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 ③ 본 리그 참가팀과 소속 시도협회는 대진 추첨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팀의 유불리(강팀과의 연속 경기, 투수 부족, 전국대회 참가 등)에 대한 사유로 대진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해당 지역의 아래와 같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일정 연기를 경기 담당관이 검토할 수 있다.

등급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④ 우천, 구장 사정, 전국대회 참가 등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일정은 주말리그 종료 후 재편성되며, 순연 및 시간 변경 등의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주말리그 경기 전일(1일 전) 전국대회 경기가 있을 경우, 해당 주말리그 경기 일정은 추후 재편성된다.

■ 제5장 경기 규정

제1조 (규칙) 본 리그는 공식야구규칙을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고교야구 주말리그 관련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경기 성립) ① 정식 경기는 5회로 하며, 5회 이전 경기 및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5회 이후 종료되지 않은 회의 동점 또는 역전)는 추후 일정에 따라 일시정지(서스펜디드) 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정식 경기가 성립된 경기는 진행상황까지의 총 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② 조명시설이 없는 구장은 일몰시간 15분 전에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일몰시간까지 경기를 종료하도록 한다. 일몰시간 기준 2시간 30분(150분) 이전에 시작된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③ 당일 최종 경기는 회수에 관계없이 23시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22시 45분 이후에는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해당 이닝으로 종료한다.

④ 정규 이닝(9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이닝(10회)부터 승부치기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말리그 경기 규정)

① 리그 콜드 게임 선언은 7·8회 7점으로 한다.

②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 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③ 각 팀은 총 2회의 4심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규이닝 이후(10회)에는 잔여회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4심 합의 후의 판정은 반복되지 않으며, 판정불복이나 어필을 계속할 시 바로 퇴장 조치한다. 4심 합의 판정 대상에서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스트라이크/볼 판정 등은 제외한다.

④ 협회의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제도에 따라 아래의 투구 수 제한 지침을 따른다.

1. 투수의 1일 최대 투구 수는 105개로 하며 공식기록원의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2. 투구 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을 갖는다.

투구 수	휴식일
1 ~ 45구	없음
46 ~ 60구	1일
61 ~ 75구	2일
76 ~ 90구	3일
91구 이상 최대 105구	4일

[투구 수에 따른 휴식일 예시]

	1	2	3	4	5	6
투수1	25구	42구	휴식	투구가능		
투수2	62구	휴식	휴식	투구가능		
투수3	105구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투구가능

3. 최대 투구 수 105개를 투구한 투수는 볼카운트에 관계없이 곧바로 교체하여야 하며, 뒤늦게 확인될 경우 발견 즉시 교체한다.

4. 같은 날, 던진 투구 수는 합산하여 의무 휴식일을 갖으며 2일 연속 투구로 간주한다.

5. 투수의 3일 연속 투구를 금지한다.

6. 노히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투수가 투구 수 제한에 적용될 경우, 계속 투구할 수 있으며, 기록이 중단됨과 동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⑤ 베이스는 설치된 각 구장 규격에 따른다.

■ 제6장 경기 진행규정

제1조 (선수 및 지도자의 출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 선수는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 명단에 명시된 선수에 한한다.

②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 총 3부를 작성하여 기록실(협회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출전선수와 교체선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기록원과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 명단을 대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기 중 선수 교체 및 어필은 오직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공식야구규칙에 명시된 어필 사항 이외의 어필을 하는 감독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④ 아래 경우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 교체 후 경기를 계속 진행하며 해당 팀의 지도자는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경기 종료 후 아래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팀 지도자 및 관련 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 팀 이적 및 유급 등으로 대회 출전이 제한된 선수
2. 참가신청서 미기재 선수
3.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 미등록 선수

제2조 (경기 담당관) ① 경기 담당관은 해당 경기를 주관,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경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② 경기 담당관은 경기 개시 전 경기장 등을 점검하며, 우천 또는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③ 경기 담당관은 경기 전 경기장 내 응급후송차량 배치 여부와 의료진(응급초지 가능 전문가 또는 간호사) 배치와 자격 사항을 확인한다.

④ 경기 담당관은 경기 종료 후 경기 담당관 보고서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제출한다.

제3조 (경기준비 및 워밍업) ①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이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해당 팀에 있다.

② 당일 첫 경기 대진팀 중 홈팀은 경기시작 전(각 경기장 사정에 따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습이 종료되면, 10분 내로 필드를 정리하고 덕아웃 내에 위치하며, 원정팀은 이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연습시간 배분은 경기 담당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앞 경기가 종료된 후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20분 미만일 경우, 양 팀은 필드 연습을 생략하고 워밍업 후 바로 경기에 들어간다.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주심은 내·외야를 반으로 나눠 필드 연습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구장 정리 시에는 외야에서의 연습만 허용한다.

제4조 (도핑방지 의무)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 등)은 항상 도핑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다.

제5조 (경기의 진행) ① 경기 시작 전 양 팀 선수단 도열하여 심판의 홈플레이트 미팅 후 경기를 시작한다.

② 선수단은 덕아웃, 필드 등 경기장 내에서 침을 빨거나 배팅장갑, 배트, 공에 침(타액)을 포함한 이물질 을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공수교대 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공격과 수비의 플레이볼은 60 초 이내에 해야 한다.

④ 경기 중에 지도자의 타임요청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하여 총 3회로 하며, 정규이닝(10회) 이후부터 3이닝 당 1회를 추가한다. 단, 이 때 정규이닝의 '타임요청' 횟수는 연장이닝 '타임요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경기당 총 2회로 하며, 정규이닝 이후(10회)부터 3이닝 당 1회를 추가한다. 허용횟수 이후 포수의 마운드 방문은 팀의 타임요청 1회로 산정하며 ④항을 적용한다.

1.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마운드에 방문할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 과 포수 타임을 각각 적용한다.

2. 덕아웃에서 감독이 포수를 불러 작전을 지시한 경우는 포수 타임으로 적용한다.

3.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지도자가 포수 또는 야수에게 지시한 이후 포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마운드를 방문한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으로 적용한다.

제6조 (경기 스피드업) ① 지도자 및 포수의 마운드 방문 제한시간은 30초로 하며, 복귀 시에는 속보로 이동한다.

②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이 투수 마운드에 갈 수 있다.

③ 감독, 코치, 선수가 경기 중 공식기록원의 판정에 대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심판은 첫 번째

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타자는 타격 중 불필요한 행위로 타석을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 ⑤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은 불응할 수 있다.
- ⑥ 경기 중단 시에 베이스코치가 코치박스를 벗어났을 경우 경기 재개 시 속보로 코치박스로 복귀한다.
- ⑦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는 덕아웃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⑧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볼로 판정한다.
- ⑨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경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 보크로 판정한다.
- ⑩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2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4구로 한다.
- ⑪ 경기 중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지도자의 선수 기술 지도 및 훈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제7조 (경기 중 금지행위) ①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코치·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베이스 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 ②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에게 빈 글러브로 태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③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와 포수에게 경고를 선언한다.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협회에 등록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만이 덕아웃과 경기장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미등록 임원 및 지도자가 발견될 경우 퇴장 조치한다. 트레이너는 해당 팀의 재직증명서 증빙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제8조 (유니폼 및 장비)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보석류 포함)를 착용하지 않는다

-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리그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유니폼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심판, 공식기록원, 상대 팀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 ③ 덕아웃, 벤치 밖에는 일체의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 ④ 선수는 반드시 양귀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베이스코치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제7장 징계 및 포상

제1조 (징계 적용) ① 주말리그 몰수게임과 선수 퇴장 관련된 사항은 해당 경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②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관중석에서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 등)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대회 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 ④ 경기 담당관(시·도 협회 임원)은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기 운영으로 팀 승패 및 개인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계속된 행위 발생 시 관련자(지도자, 선수)는 심판의 지시로 즉각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징계한다.

제2조 (대회 중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① 주말리그 참가한 지도자 및 학생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

회의 「위반행위 별 징계 기준」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한다.

② 위반 행위 및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반 행위	제재(출전정지)
논쟁의 지연(5분 이상)	퇴장/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
심판에게 불필요한 발언, 행동, 접촉, 욕설	
폭력적으로 장비를 던지는 행위(헬멧, 배트 포함)	
심판/선수 대립	
벤치 클리어링	
폭행	
팬, 학부모, 경기 임원(감독관 등)과의 용인할 수 없는 대립	
시설 및 기물 파괴	
경기 중 덕아웃과 스탠드 간 커뮤니케이션	(감독) 1~2경기
타자에게 몸에 맞는 볼을 고의로 던지는 행위	퇴장 / 1~3경기
덕아웃에서 경기장 안으로 장비를 던지는 행위	퇴장 / 1~3경기
마운드 차징(타자가 투수 방향으로 이동해 투수와 대립)	퇴장 / 1~2경기
타자의 머리 부분에 고의로 볼을 던지는 행위	퇴장 / 1~3경기
불법(비공인)배트 및 외부 물질/변질된 볼을 사용하는 행위 * 불법(비공인) 배트를 타격 전, 타격 중이나 타격 완료 이후 발견되었을 경우 타자는 아웃 처리 후 곧바로 퇴장조치하고 본 제재조치한다.	퇴장 / 1~3경기
퇴장 조치 후 덕아웃에 머무는 행위	1~2경기
플레이 종료 전 덕아웃 밖으로 나와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퇴장 / 1~3경기
지나친 응원(상대 투수의 투구를 방해하는 말 또는 행위, 상대팀 야유, 춤추기, 예의에 벗어난 말 또는 행위, 국기문란 노래 등)	(1차 경고) 퇴장 / 1~3경기
지나친 세리머니(경기 중 및 경기 종료 직후) * 물 뿌리기, 장비, 로진 등을 던지는 행위 등 * 세리머니로 인한 타자/주자의 아웃	(1차 경고) 퇴장 / 1~3경기
경기 전·후 선수단 상호 간 인사 또는 하이파이브 거부	(감독) 퇴장 / 1~2경기
지정 구역 외 흡연	1경기

③ ②항 기준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당 경기에 배정된 심판 전원과 경기 담당관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출전정지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④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위반자 소속, 성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전국대회 위반 행위 보고 및 제재 결정서'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사무처는 위반자 및 소속 팀에 최종 제재를 통보한다.

⑤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소속 팀 감독을 제재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본 리그 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단체상	선수 개인상	지도자상
우승 / 준우승	최우수선수상/우수투수상/감투상/수훈상/타격상/타점상/도루상/홈런상	감독상 / 공로상

① 단체상 상패는 우승, 준우승만 지급한다.

- ② 타격상은 14타석 이상을 충족한(6경기x0.8x3) 대상자 중 최고타율 선수에게 수여하며 단, 동률일 경우 최다타석→최다타수→타점→루타수→홈런 순으로 결정한다. 그 외 개인상 대상자가 동일한 성적일 경우, 타율→최소타석수→최소타수→타점→루타수→홈런 순으로 결정한다.
- ③ 사이클링 히트 기록은 시상하지 않는다.
- ④ 시상은 각 시·도협회에서 주말리그 종료된 후 적당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 제8장 리그 참가팀의 의무

제1조 (의무) ① 본 리그의 참가 팀은 의무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리그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반드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인 등록규정 및 본 리그 운영규정을 확인하고 숙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확인(숙지)에 따른 책임은 해당 팀에 있다.

제2조 (참가자격 발탈) 본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 참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진 확정 후나 리그 참가 중 중도 포기 등 리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 팀의 다음 연도 본 리그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제3조 (출전보조비 신청 및 정산) ① 리그 참가에 따른 출전보조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팀은 지출용도에 맞게 사용한 후 학교장 또는 팀대표 확인 공문과 함께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1. 지원항목

지출 용도
주말리그 참가 관련 숙박비, 주말리그 대회 출장, 식비, 간식비, 버스 임차료, 보험료 등 유류비(학교 법인차량만 가능 → 자동차등록증 필수 제출 시 인정)

2. 지원 불가 항목

지출 불가 항목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용품 구입, 인건비, 업무추진비, 개인용 차량 유류비, 타 대회 출전 관련 지출 등	

3. 정산서류

- 1) 학교장 또는 팀 대표 확인 공문서, 2) 정산보고서(협회 양식), 3) 지출결의서(또는 품의서, 사전결재문서), 4) 카드영수증/계좌 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이체증+임차계약서 등의 거래 명세서 일체, 5)통장 사본, 6) 팀 사업자등록증

4. 문의처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영지원팀 02-572-8411 내선 270번

② 출전보조비 지급 대상 팀은 본 규정의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야구소프트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항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출전보조비의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조치를 한다.